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4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박해철·최민희·박지원
김 윤·이용선·박지혜
조정식·박 정·박균택
김 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부터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양성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3).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시행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신 설></p> <p><신 설></p> <p>① ~ ⑥ (생 략)</p> <p>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생 략)</p> <p><신 설></p>	<p>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기상청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시행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p>③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p>

<신 설>

② (생 략)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육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

⑥ 제2항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